

[별표 3] <개정 2008.8.20>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말(당나귀 포함)·양·돼지 등 포유류

- (1) 검사는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 (2) 검사대상가축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개체별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가) 가축의 자세·거동·영양상태·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체온을 측정한다.
 -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 (다) 필요한 경우 안검(眼瞼)·비강·구강·항문·생식기·직장검사를 실시한다.
-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 (1) 검사는 군별검사와 개체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군별검사는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실시하고, 개체별검사는 도축장 안의 생체검사대에서 실시한다.
- (2) 검사대상가축의 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수송중 죽었거나 손상이 심하여 식육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골라내어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군별검사는 가축의 자세·거동상태 등을 관찰한다.
- (5) 개체별검사는 군별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털의 상태 및 안검·비강·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 (6)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계류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은 가축의 검사결과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가)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블루텅병·리프트게곡열·럼프스킨병·가성우역(假性牛疫)·소유행렬·

결핵병(結核病)·브루셀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스크라피·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BSE)·소백혈병(임상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놀라타에 한한다)

- (나) 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수포병(水疱病)·돼지텃센병·돼지단독·돼지일본뇌염
- (다) 양두(羊痘)·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아프리카마역(馬疫)·광견병(狂犬病)
- (라) 뉴캐슬병·가금콜레라·추백리(雛白痢)·조류(鳥類)인플루엔자·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가금티프스
-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상풍·농독증·패혈증·요독증·황달·수종·중양·중독증·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2. 식육의 검사기준

가. 소·말(당나귀 포함)·양·돼지 등 포유류

(1) 검사항목

(가) 혈액 및 가축

(나) 머리·혀·인두후·목부위 및 그 인근 림프절

(다) 폐·폐문·폐림프절 및 폐종격

(라) 심장·심낭

(마) 횡격막

(바) 간·간문 및 그 인근 림프절

(사) 위·장간막림프절 및 망막

(아) 비장·췌장·신장 및 그 인근 림프절

(자) 방광·고환·음경·난소·자궁·질 및 외음부

(차) 지육

(2) 검사방법

(가) 소

- 1) 내외교근은 하악과 병행하여 절개하여 검사한다.
- 2) 간장은 담관 및 우엽·좌엽을 가로로 절개하여 검사한다.
- 3) 신경은 지방을 분리한 후 검사한다.
- 4) 자궁은 절개하여 검사한다.
- 5) 심장·심낭은 양심실을 동맥에 따라 절개하여 검사한다.

(나) 말·당나귀

두부를 횡단하여 비중격을 절개하여 점막을 검사한다.

(다) 면양·산양

간·폐 및 두부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라) 돼지

복근·횡경막·목·심장·허 및 인두후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구 분	대 상 질 병	폐 기 범 위			가 측 별
		일부	전체	폐 기 세 부 내 용	
위장관	농양	○			포 유 류
	복막염		○	위장관 전체폐기	포 유 류
	장염		○	장관 전체폐기	소·돼지
	직장협착			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폐기	돼 지
	제2위염	○		제2위-횡경막-심장막 누관 형성 시 식육 전체폐기	반 추 류
	제1위비장염		○	위장관 전체 폐기	반 추 류
	비중		○	비장 폐기·전신성 병변여부확인	포 유 류
	장간막림프절결핵		○	식육 전체 폐기	포 유 류
	오염	○		오염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 관 전체폐기	포 유 류
간	복막염	○			포 유 류
	농양		○	간 폐기	포 유 류
	간경화	○			포 유 류
	간출혈	○			포 유 류
	지방간		○	간 폐기	포 유 류
	부맥반	○			포 유 류
	결핵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 검사 실시	포 유 류
	간질증		○	간 폐기	소
	밀크반점		○	간 폐기	돼 지
	세경낭미충		○	간 폐기	돼 지
	파라티프스결절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소·돼지

심장·폐	점상출혈			전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폐 폐기	포 유 류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	○		심장 전체폐기	포 유 류
	심근농양	○		내장·머리 및 지육폐기	포 유 류
	폐수종	○		폐 폐기	포 유 류
	흡입성출혈	○		폐 폐기	포 유 류
	간질성폐기종	○		폐 폐기	포 유 류
	기관지확장증	○		폐 폐기	포 유 류
	화농성기관지폐렴	○		폐 폐기	포 유 류
	심장내막염	○		심장 폐기	포 유 류
	폐렴·흉막염	○		폐 폐기, 폐와 늑골흉막의 분리 가 불가능하면 장·폐·전체갈비 부위 폐기	포 유 류
신장	점상출혈		○	신장 폐기, 전신성감염증으로 추정시 다른 장기와 지육을 정 밀검사 실시	포 유 류
	농양		○	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농양 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포 유 류
	백반신과신우신염		○	신장 폐기	포 유 류
	신낭		○	신장 폐기	포 유 류
	오염		○	신장 폐기	포 유 류
머리·혀	농양	○	○	관련장기 폐기	포 유 류
	오염			오염부위 폐기	포 유 류
	결핵			정밀검사 실시	소·돼지
	방선균증, 악티노 바실러스증		○	관련장기 폐기	소
	눈편평상피암		○	머리 폐기	소
	림프절의 혈액흡수			관련머리 정밀검사 실시	돼지
지육	화농성 병변	○		농양부위 폐기	포유류
	관절염	○		관련부위 폐기, 전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리·지육 및 내 장 폐기	포유류

복막염	○		관련부위 폐기	포유류
흉막염	○		관련부위 폐기	포유류
창상, 좌상	○		악취가 나면 전체지육 폐기	포유류
오 염	○		관련부위 폐기	포유류
결 핵		○	전체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	소·돼지
방선균증	○		관련부위 폐기	소
피부병변(농양·구진· 농포)	○		관련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구진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의 농양시 전체지육 폐기, 피부청 색증시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하고,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린 식육(이하 "부정행위식육"이라 한다)의 검사는 수분단백비 등 이화학적 검사로 한다.

나.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구분

해체 전 검사 및 해체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검사내용 및 방법

(가) 해체 전 검사

- 1) 우모 및 잔모의 제거상태
- 2) 발목부위의 기형과 목뼈의 적정제거여부의 확인
- 3) 백혈병·패혈증·독혈증·관절염·염증·농양·괴양·피부기생충증·황색종증의 감염여부 검사
- 4) 멍들거나 도살 전에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이물질오염도체, 과탕지도체(껍질이 익은 것을 말한다), 부패도체, 복부팽만도체여부 검사

(나) 해체 후 검사

- 1) 정상적인 도체절단 및 장기제거상태 확인
- 2) 내부장기·조직·체벽을 검사하여 병변·삼출물 및 이물질 오염 여부 검사
- 3) 비장은 으깨어 보고 간은 손으로 진단하여 경변정도 및 표면의 이상여부 검사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가) 도체와 내장 전부폐기

- 1) 결핵병 또는 백혈병에 감염된 도체
- 2) 서로 다른 장기에 2개 이상의 종양이 있는 도체
- 3) 심한 기낭염·복막염·복수증·내장유착 등이 있는 도체
- 4)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부패도체 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체

(나) 부분폐기

- 1) 생체 및 도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1개의 장기에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장기만을 폐기하고, 2개 이상의 장기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장기 전체를 폐기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어 전신성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면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 2) 생체 또는 도체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서 1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장기를 포함한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한다.

다. 식육의 검사결과 부정행위식육으로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불합격품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